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1차 협력사"라 한다)는 ①데스비에 (수) (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전자산업 생태계 문화와 기업시스템에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

제2조, 1차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 하고, 이를 위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하도록 한다.

제3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에 의한 결제를 없애도록 한다.

제4조, 1차 협력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취지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1차 협력사는 삼성전자와의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협력 채널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도 공개하도록 한다.

제6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2차 협력사에게는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동반성장 지원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 관행 정착을 위해「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합리적 단가산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2차 협력사는 품질혁신,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추진하여 전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 협약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상호 성실히 준수해야 하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및 하나 또는 행정소송 등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2012년 10월 30일

(1차 협력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u>이 문 용</u> (인) 133-81-27249

(주)원익아이피에스 이 문 용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제 조 반도체장비

(2차 협력사)

대표이사 기운터 134-81-46007 S B M 기사용 정왕시화공단 2마 802 제 조 반도체장비판금